##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검 사】이준식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배상신청인】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